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표(19종)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사회복지과 (320-2346)	45일	1. 설치계획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목,면적,소유주,용도지역 등) 마. 시설배치계획도 바. 시설별·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배치 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 자. 공사추진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 대책등 2. 운영계획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	38일	1. 설치계획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목,면적,소유주,용도지역 등) 마. 시설배치계획도 바. 시설별·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배치 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 자. 공사추진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 대책등 2. 운영계획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보육시설인가	사회복지과 (320-2317)	신규인가 14일	<p>○ 신규 인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확인서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 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신규인가 7일	<p>○ 신규 인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확인서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 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변경인가 7일	<p>○ 변경인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인가 3일	<p>○ 변경인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가족 봉안묘 설치허가	사회복지과 (320-2343)	10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면도 2.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6.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면도 2.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문중 봉안묘 설치허가	사회복지과 (320-2343)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6.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7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가족묘지설치허가	사회복지과 (320-2343)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6.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7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중중,문중 묘지설치허가	사회복지과 (320-2343)	10일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중중·문중의 의사 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중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6.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7일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중중·문중의 의사 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중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산업경제과 (320-2356)	20일	1. 사업계획서 2. 상권영향평가서 3. 지역협력계획서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0일	1. 사업계획서 2. 상권영향평가서 3. 지역협력계획서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산업경제과 (320-2352)	7일	1. 신청서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3. 주유기명세서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일	1. 사업계획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 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허가	산업경제과 (320-2352)	5일	1. 신청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집단공급자 경우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일	1. 사업계획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고압가스(제조,저 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 (온라인 사전심사 서비스 실시 민원)	산업경제과 (320-2352)	5일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기술검토서	5일	1. 사업계획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지적도	
전기사업 허가	산업경제과 (320-2352)	60일	1. 사업계획서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3. 5만분의1 지형도 4. 송전관계 일람도 5. 재원조달 계획서 6. 기술인력 확보계획	30일	1. 사업계획서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3. 5만분의1 지형도 4. 송전관계 일람도 5. 재원조달 계획서 6. 기술인력 확보계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산업경제과 (320-2366)	20일	1. 신·구 허가사항 대조표 2. 증차시 가. 차고지 설치확인서 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0일	1. 신·구 허가사항 대조표 2. 증차시 가. 차고지 설치확인서 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산업경제과 (320-2365)	15일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장의 위치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예정배치도 (매매업의 경우 제외)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업원확보계획 포함)	7일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장의 위치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예정배치도 (매매업의 경우 제외)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업원확보계획 포함)	
농지전용신고	농업정책과 (063-320-2812)	10일	1. 농지전용(변경) 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4. 지적도등본 또는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신청시)	5일	1. 농지전용(변경) 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4. 지적도등본 또는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신청시)	
농지전용허가	농업정책과 (063-320-2812)	10일	1. 농지전용(변경)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4. 지적도등본 또는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신청시)	5일	1. 농지전용(변경)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4. 지적도등본 또는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신청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건설과 (320-2447)	7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등표시신청서 2.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서 3. 시방서 4. 원색도안 5. 간판 제작 설계도면 6. 사진(건물광고물 부착위치) 7. 건물(대지)사용승낙서 	3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등표시신청서 2.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서 3. 시방서 4. 원색도안 5. 간판 제작 설계도면 6. 사진(건물광고물 부착위치) 7. 건물(대지)사용승낙서 	
개발행위허가	건설과 (320-2448)	15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서류 3.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6. 개발행위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7.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 도서 및 예산내역서 	7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서류 3.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4.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환경위생과 (320-2337)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승인/변경승인 1) 승인신청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승인 신청서 나.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다.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 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라.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 사.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아.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 자.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승인/변경승인 1) 승인신청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승인 신청서 나.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다.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 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라.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사.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아.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 자.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제)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p>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가능</p> <p>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p> <p>2)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p> <p>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변경승인 신청서</p> <p>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p> <p>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p> <p>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p> <p>마.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p> <p>바.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p>		<p>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가능</p> <p>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p> <p>2)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p> <p>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변경승인 신청서</p> <p>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p> <p>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p> <p>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p> <p>마.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p> <p>바.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p>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1) 설치 신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 마.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 2) 설치 변경신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 마.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1) 설치 신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 마.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 2) 설치 변경신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 마.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환경위생과 (320-2388)	10일	<p>1. 일반 제출서류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p> <p>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p> <p>나.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p> <p>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같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p> <p>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p> <p>2.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p> <p>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p> <p>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p> <p>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도면</p> <p>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p>	5일	<p>1. 일반 제출서류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p> <p>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p> <p>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p> <p>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p> <p>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p> <p>2.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p> <p>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p> <p>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p>	